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

[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7. 7. 3. 2007고단334]


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

【검 사】박현규

【변 호 인】변호사 손양곤(국선)

【주문】

1

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.

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08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.

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3개 및 주사기 뚜껑 1개를 각 몰수한다.

【이유】

]

[이유]

]

[이유]

1

[이유]

]